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
- 일부 자구의 수정
- 적용시한의 명시

주요골자

- 제2조중 “취득하여 등기하는”을 “취득 또는 등기하여 직접 사용하는”으로 하여 직접사용하는 재산에만 면제
- 면제세목에 소방공동시설세 추가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